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소관부서 : 마케팅본부

제정 : 2022.07.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그 외 업무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나.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다. 판매회사 보수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라. 신탁업자 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 운영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과보수 : 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회사 보수 및 판매수수료 : 법 제7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 :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유사전략, 동일구조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회사 보수 및 판매수수료 수준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종류형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복수의 자집합투자기구 등 실질이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간에는 보수·수수료 수준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를 위한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교체, 전환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

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
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적정성 점검) 회사는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미비점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보완·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22.07.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